

 신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규정번호 산단 1-1-1 제정일자 2004.03.04. 개정일자 2022.02.07. 책임부서 산학협력단
---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신안산대학교 내에 두고, 필요시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목적 및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 사업 및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산업체 수요와 미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9. 산업체 지식·기술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10. 산학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유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 대한 경영이나 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자문
12. 시험성적 분석 및 인증 업무
13. 연구지원에 대한 안내 및 홍보
14. 간접 연구경비 징수 및 관리
15. 산학협력 교육훈련 운영 및 지원 사업
16.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지원
17. 디자인, 출판 업무
18. 대학 안에 설치·운영되는 각종 산학협력 관련기관이나 사업에 대한 지원 등
19. 교수현장연구, 학생현장실습 등 산업체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20. 학교기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수탁 받은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의 보조(보육 및 유아교육, 사회복지, 평생교육 관련기관 등)
22.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관련기관)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관 또는 조직을 두고 업무를 할 수 있다.

제2장 조 칙

제6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7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장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에 따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 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

- ② 감사는 본 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 ③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사항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은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산학협력단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의 정관 제4조 사업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연구기관 및 그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②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팀(연구지원, 회계관리)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기업 및 부설기관 등을 두고 그 운영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제10조(직원의 임용 등)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과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은 따로 정한다.

- ② 총장은 단장의 요청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단장과 협의하여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제9조에 규정한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학교기업)

- ① 산학협력단에서는 학교발전을 위하여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학교기업의 설치시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하며, 그 수입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 ③ 학교기업을 활용한 사업종류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의2(학교기업의 설치)

-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합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한다.
- ② 학교기업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에 설치한다.
- ③ 회계편제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한다.
- ④ 학교기업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명칭, 연계학과 및 사업종목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 위원은 단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학의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 취업처장, 사무처장, 입학총보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대학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사업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6.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부설기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사업의 지원과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의3(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14조(재산의 구분)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출연금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또는 물품
3.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4.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제15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기부금·보조금
3. 사업수익
4. 차입금 등

제16조(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연구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6. 법률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계약 학과·학부의 설치·운영에 따른 납부금 등의 수입금
7.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구 및 실험·실습 시설이나 장비 등의 사용료
8. 유·무형 자산 매각에 따른 수익금
9.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7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연구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4. 학교기업의 운영비
5.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6.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7. 특허정보 조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8. 대학의 시설 및 운영 등 대학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9. 연구 활성화 및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경비

10. 유·무형 자산 매각에 따른 소요경비
11. 산학협력지출지주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
12.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7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보상금) ① 산학협력단(부설기관 및 사업단 포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수탁 받은 시설의 근무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보상금 지급기준은 재원의 성격, 수익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해당 사업별 개인의 연간 지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응자금(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업 : 월 기본급의 200% 이내
2. 대응자금(지원금)을 받거나 상환하는 사업 : 월 기본급의 150% 이내
- ③ 보상금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19조(채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20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단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20조의2(회계관리와 회계기관)**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 ③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을 두며, 수입징수관은 단장으로 한다.
- ④ 산학협력단의 지출에 관한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위하여 계약관을 두며, 계약관은 단장으로 한다.
- ⑤ 산학협력단은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분임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이 임명한다.
- ⑦ 산학협력단 소관이외의 정부재정지원사업 종 수입과 지출을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해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회계분임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20조의3(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 소액 지출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 단서에서 인정되는 소액의 범위는 동일 지출원인 행위에 의한 채권자별 1백만 원 이하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산학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심의·확정해야 한다.

1.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 부속서류
- ④ 산학협력단장은 확정된 결산서를 총장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부부처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산학협력단장은 심의·확정된 결산서를 공개해야 하며,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⑥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비밀유지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제작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정관의 변경) 총장은 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단장은 이를 관할법원에 변경 등기하여야 한다.

제25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④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공고의 방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본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내 학보에 공고한다.

제27조(부설기관) 산학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운영세칙 등) 단장은 산학협력단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